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370
----------	-----

제출년월일 : 1998. 5.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6조 및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중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제4호 규정에의거 군사시설, 환경정화대상지역의 가림간판 허가하는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허가여부, 규격결정)를 독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함

□ 주요골자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9조 제1항(권한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정함.

○ 심의대상

-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 가림간판
-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고속도로 및 철도의 주요정계시설의 가림간판
- 다. 환경정화대상지역(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수집, 보관 또는 처리하는 장소)가림간판
- 라.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부의하는사항

○ 위원회의 구성요건

- 위원장을 포함한 5인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하며 당연직위원은 도시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이되고
- 외부위원으로는 국어학자 또는 국어교사,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 미술, 디자인 등에 관한 전문가
- 기타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구성토록 되어있음.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제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한다)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파주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2. 국어학자 또는 국어교사
3.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미술, 디자인 등에 관한 전문가
4. 기타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
2.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의 본인, 친척인척 및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안전에 관하여는 그 심의. 의결에 참여할수 없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회의당일에 배포할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 계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체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屋外廣告物等管理法

●屋外廣告物等管理法^[1990·8·15] 法律第4242號

改正 1992·12·8 法律第4516號

第1條 (目的) 이 법은 屋外廣告物의 表示場所·표시방법과 揭示施設의 設置·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美觀風致와 美風良俗을 유지하고 公衆에 대한 危害를 방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屋外廣告物”이라 함은 常時 또는 一定期間 계속하여 公衆에게 표시되어 公衆이 자유로이 通行할 수 있는 場所에서 볼 수 있는 것(大統領令이 정하는 交通施設 또는 交通手段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看板·立看板·懸垂幕·壁報·傳單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揭示施設”이라 함은 廣告塔·廣告板과 기타 工作物로서 屋外廣告物(이하 “廣告物”이라 한다)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施設을 말한다.
3. “屋外廣告業”이라 함은 廣告物을 표시하거나 揭示施設을 設置하는 營業을 말한다.

第3條 (廣告物등의 許可 또는 申告)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場所 및 물건에 廣告物 또는 揭示施設(이하 “廣告物등”이라 한다)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거나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許可 또는 申告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
2.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文化財 및 文化財保護區域
3. 山林法에 의한 保全林地
4. 自然公園法에 의한 自然公園
5. 道路·鐵道·空港·港灣·軌道·索道·河川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그 부근의 地域
6. 기타 美觀風致의 유지 및 都市環境의 보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場所 및 물건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設置의

방법 및 期間 등 許可 또는 申告의 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廣告物 등의 금지 또는 제한) 市·道知事は 第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場所 또는 물건에는 美觀風致·美風良俗의 유지 또는 公衆에 대한 危害의 방지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廣告物 등의 표시·設置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第5條 (禁止廣告物 등) ①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廣告物 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하여서는 아니된다.

1. 信號機 또는 道路標識 등과 유사하거나 그 效用을 방해하는 形態의 廣告物 등
2. 기타 道路交通의 安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廣告物 등

②누구든지 廣告物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犯罪行爲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淫亂 또는 頹廢的 내용 등으로 美風良俗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靑少年의 보호·善導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기타 法令의 規定에 위반되는 것

第6條 (國家 등의 廣告物 등 제한)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이하 “國家 등”이라 한다)는 당해 機關의 廣告物 등중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對象 廣告物 등에 당해 機關이 아닌 廣告主를 위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公共의 目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廣告物管理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條 (廣告物管理審議委員會) ①廣告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官廳에 廣告物管理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5人 내지 9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 (適用排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廣告物 등에 대하여는 第3條 및 第4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1. 다른 法令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廣告物 등
2. 國家 등이 公共의 目的으로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廣告物 등. 다만,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廣告物 등의 표시·設置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地域·場所 또는

第14條 (營業停止等) 市・道知事は 屋外廣告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市・道の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6月이내의 營業停止 또는 閉鎖를 命할 수 있다.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2. 이 法에 위반되는 廣告物등을 設置하여 公衆에 危害를 끼친 때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第15條 (聽聞) 市・道知事は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處分의 상대방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處分의 상대방 또는 그 代理人이 正當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公衆에 대한 급박한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6條 (權限의 委任) 市・道知事は 당해 市・道の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일부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17條 (手数料) 다음의 경우에는 그 許可 申請時・申告時 또는 安全度檢査時에 각각 市・道の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数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度檢査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第18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
2. 第4條 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
3.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屋外廣告業을 한 者

②第3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9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1991. 1. 8)
대통령령제13242호

소관부처 : 내무부

개정 1991. 12. 17 대통령령제13517호
1992. 5. 30 대통령령제13655호(건축법시행령)
1993. 2. 24 대통령령제13856호
1994. 12. 31 대통령령제1448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1997. 2. 6 대통령령제1527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이라 함은 지하도·철도·지하철·공항·항만 및 고속국도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수단”이라 함은 열차(전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을 말한다.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91.12.17, 93.2.24, 97.2.6>

1. 가로형간판 : 문자·도형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인쇄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주유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세로형간판 : 문자·도형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인쇄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4. 공언간판 : 공언을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언건물의 벽면에 설치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정방형·삼각형 또는 원형등의 계

②시·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과 함께 그 게시시설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 8 조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 법 제 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제10조 내지 제12조 또는 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1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에 의할 것

제 9 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①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광고내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변경 사항에 관한 제 7 조제 1.항 각호의 해당 서류(공연간판의 경우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의 첨부서류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으로 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1·12·17>

②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2·6>

③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종료일 15일전까지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 7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원색도안을 제외한다) 및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1·12·17, 97·2·6>

제 3 장 금지 및 제한

제10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①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12·17, 93·2·24,>

97·2·6>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아파트 지구와 시설보호지구
2.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풍치지구 및 보존지구중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4. 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하천 및 하천구역
5.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6.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생태계보호지역 및 특정야생동·식물보호구역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8.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9. 화장장·장례장 및 묘지
10. 도시계획구역밖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철도의 양측 갓길(노면 또는 길어깨를 말한다. 이하 같다)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10대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11. 교량·축대·육교·고가도로 및 석도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등은 제 1 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3·2·24, 97·2·6>

1.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벽 보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고속국도 및 철도의 주요정거시설의 가림간판

다. 시·도지사가 승인한 환경정화대상지역(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리하는 장소등으로서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림간판

제11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24, 97·2·6>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 장
8. 재배중인 농작물

제12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2·5·30, 97·2·6>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설계지구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내용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7·2·6>

제4장 표시방법

제13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93·2·24>

②광고물등은 상품·업소등을 상징하는 도형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광고물등은 제14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하는 규격·방법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제17조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1·12·17, 93·2·24, 97·2·6>

1.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요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의 길이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두께는 지름 25센티미터이내, 그 세로의 길이는 1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1개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초과시마다 1줄씩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목조건물 또는 가건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전면폭의 3분의 1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옥상간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소유하거나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네온 또는 전광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2·24, 97·2·6>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공업지역(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그 지역이 주거지역과 연결되어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다.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과 그 연결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3.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②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특별시에서는 5층,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또는 5층중 당해 광역시의 조례가 정하는 층,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3층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7·2·6>

1. 14층이상의 자기의 건물 옥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2. 최저층수미만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높이 180센티미터이내의 간판(1면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

3.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4.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③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2·6>

④옥상간판의 표시규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5·30, 93·2·24, 97·2·6>

1. 가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이내(가로 최대길이 30미터이내), 세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225제곱미터이내(세로 최대길이 20미터이내), 높이

- 15미터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구조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을 말한다)의 8분의 1이하인 때와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당해 간판이 옥상구조물의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된 경우에는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광고물의 높이에 산입하고 건물의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간판의 높이는 제 2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산정하고, 당해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24, 97·2·6>

1. 간판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에서는 간판(제23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 내지 50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업소가 입주하여 상품선전이 아닌 자기업소의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과 공업지역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은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도로중 왕복 8차로이상의 도로와 시 및 군지역에 있는 도로중 왕복 6차로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간에는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목조건물·가건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물에는 게시시설 또는 간판을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옥상간판의 설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 180센티미터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2·6>

⑦제10조제 2 항제 4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에 대하

여는 제1항제1호, 제2항,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3·2·24, 97·2·6>

제20조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
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
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3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3·2·24, 97·2·6>

②동일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3·2·24, 97·2·6>

③지주이용간판은 화단 또는 기단을 설치한 후 그 안에 이를 표시하되, 차도 또
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91·12·
17, 93·2·24, 97·2·6>

④지주이용간판의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주유소의 표지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
다. <개정 91·12·17, 97·2·6>

⑤지주이용간판의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
서는 네온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3·2·24, 97·2·6>

⑥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은 제
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밖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
미터이내인 경우에는 도로교통의 안전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
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7·2·6>

제21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①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
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제3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7·2·6>

②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97·2·6>

③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97·2·6>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97·2·6>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6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시·군·구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지사가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안전도검사

제38조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24, 97·2·6>

1. 옥상간판(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이나 돌출간판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빌론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

제39조 (검사의 시기 및 방법) ①안전도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개정 93·2·24, 97·2·6>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도검사는 동법에 의한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2. 허가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4. 시·도지사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옥외광고등관리조례 [1991. 2. 7] 조례 제2104호]

개정 1992. 10. 17 조례 제2297호

개정 1993. 9. 10 조례 제2410호

개정 1997. 12. 31 조례 제277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도지사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영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97.12.31>

제3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①도지사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표시방법의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 색깔, 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8조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2.10.17>

③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6” 과 같다. <개정 92.10.17>

제19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5” 와 같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신설 97.12.3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련조례의 개정)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2조 제2항중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별표1)”, 제2조의2, 제3조제3항은 이를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경기도광고물관리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계획정

(별표5) (개정 97.12.31)

권한 위임 사항 (제 19 조 관련)

번호	위임사무명	처리		근거 법령
		도지사	시장 군수	
1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법 제3조 영 제4조 내지 영 제7조
2	광고물등의 표시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	법 제3조 영 제4조 내지 영 제7조
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에 관한 사항		○	법 제3조 영 제9조
4	광고물등의 표시금지지역·장소 지정	○		법 제4조 영 제10조
5	허가 및 신고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법 제3조 영 제6조
6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지역·장소·물건에 표시할 광고물의 협의	○		법 제8조 제2호
7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구역의 지정	○		영 제12조
8	가림간판 규격의 결정		○	영 제19조제7항 및 제20조제6항
9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지정	○		영 제26조
10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완화를 위한 특정구역의 지정	○		영 제32조
11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	법 제9조 영 제39조
12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	영 제40조
1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법 제10조

번호	위 임 사 무 명	처 리		근 거 법 령
		도지사	시 장 군 수	
14	옥외광고업의 신고수리에 관 한 사항		○	법 제11조 영 제41조
15	<u>광고물등에 관한 교육</u> 가. 정기교육 나. 수시교육	○	○	법 제12조 제1항 영 제42조 제1항
16	교육의 위탁	○		법 제12조 제3항 영 제43조
17	옥외광고물등의 허가표시의 취소		○	법 제13조 및 제14조
18	영업정지등에 관한 사항		○	법 제14조 영 제44조 및 제45조
19	허가, 신고, 안전도검사, 옥외 광고업의 신고에 따른 수수 료의 징수		○	법 제17조
20	과태료의 부과 징수		○	법 제20조
21	가림간판 설치를 위한 환경 정화대상지역의 지정	○		영 제10조 제2항 제4호
22	<u>게시시설관리의 위탁</u>		○	조례 제15조의2